

기본급 184,900원 인상!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회사의 노동안전보건 의무 확립!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지부교섭 속보

10호

2023.07.28(금)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박종우 |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13차 지부교섭_ 의견접근]

휴가 전 타결!



13차 교섭만에 지부교섭 타결

지부교섭이 드디어 의견접근했다. 7월 27일(목) 대한이연에서 열린 13차 지부교섭은 4시간 가까이 장시간 진행됐다. 노사 양측은 의견접근을 위해 축소교섭까지 진행하며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의견접근에 이르렀다.

임금인상은 지회 교섭에서

지부교섭에서는 ①금속산업 최저임금 확장 적용 ② 노동계약 저지(부분근로자 대표제 불가) ③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④ 기후위기 대응 ⑤ 노동 안전보건 의무 ⑥ 성폭력 예방 및 금지에 대해 의견접근했고, 임금인상은 지회별 교섭으로 위임했다.

미타결 사업장은 집중투쟁 대상

폭염과 폭우가 기승을 부리며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자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부교섭이 휴가 전 타결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이제 임금인상 등 마지막 남은 과제는 지회 교섭에서 풀어야 한다. 만약 지회교섭이 원만히 합의되지 못하면 8월에는 미타결 사업장에 대한 지부차원의 집중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사용자들은 사업장 교섭이 잘 풀리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섭이 풀리지 않는 사업장은 지부의 집중투쟁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지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미타결 사업장 투쟁을 승리로 만들 것이다.

2023년 지부교섭 의견접근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

- ① 금속산업 최저임금(시급) 적용. 단 구체적 적용방식은 각 사업장별로 정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2. 노동계약 저지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 직종, 부서의 부분근로자 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

3.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 ①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 작업 중지. 조합과 공동으로 사고조사. 긴급(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는 조합이 의견 청취하여 사고조사에 반영.
- ② 외부기관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조합의 참여 보장. 조사결과 설명회 실시.
- ③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 전 노동자 의견수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거쳐서 제출.
- ④ 노동부 작업중지 기간 하청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 지급되도록 협의 및 지도.
- ⑤ 작업중지 해제 후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 분기 1회 이상 이행점검.
- ⑥ 하청업체와 협의체 구성.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안전, 보건 점검 실시.

4. 2023년 임금인상 : 지회 보충교섭에서 논의 후 제출

5. 기후위기 대응

- ① 회사는 매년 조합에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관련정보 제공.
- ② 회사와 조합은 상호협약하여 조합원에게 연1회(1시간) 기후위기 관련 유급교육 실시.
- ③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사간 협의체를 구성하며 저탄소 설비나 사업을 위한 투자계획 실행. 단, 구체적 실행내용과 방법은 각 사업장별로 협의.
- ④ 기후위기로 인해 또는 탄소중립적 사업환경 구축 과정에서 고용, 노동시간 그밖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받는 조합원을 파악해 불이익이 없도록 노동조건 조정. 노동조건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노사합의로 결정.

6. 노동안전보건 의무

- ①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음.
- ② 안전 확보 상태란 위험이 없는 상태이거나 위험원인이 있더라도 노동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는 상태.
- ③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잠재 위험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회사는 도급업무를 포함하여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의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안전제일의 원칙이 경영의 어떤 원칙보다 우선해야 한다.

7. 성폭력 예방 및 금지

- ① 성폭력 예방교육 연 2시간 유급 실시.
- ② 전문 강사 선정 및 교육 시기 등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 실행한다.
- ③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일터괴롭힘 금지' 준용. 조치항목에 심리치료 추가.